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-19호

「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9일

강 룽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○ 커피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커피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,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다. 커피 및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(안 제6조)
- 라. 커피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・운영 등(안 제9조 ~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·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
- 전화: 033-640-4100
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가 커피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,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커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커피산업"이란 커피(coffee)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·가공, 소비·유통, 판매·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2. "커피관련 산업"이란 커피산업 관련 기계, 디저트 식품 및 도자(陶磁), 포장기술, 커피박 활용사업,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3. "커피 및 커피관련 사업자"란 강릉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관할 구역에서 커피 및 커피관련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 등) ①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커피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 - ② 강릉시민, 커피 및 커피관련 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, 관련 전문

기관·단체 등(이하 "기관·단체 등"이라 한다)은 그 육성 주체임을 인식하고,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- 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시장은 커피 및 커피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1. 기본목표 및 방향
 - 2.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
 - 3. 사업자,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
 - 4.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시민, 관계전문가, 사업자,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- 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커피 및 커피관련 산업 육성·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제6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커피 및 커피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

- ·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 조례에서 "육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· 개발
- 2. 클러스터(cluster)의 조성 및 관리
- 3.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, 상표개발
- 4. 교육훈련시설의 설치,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
- 5. 해당 산업의 확산을 위한 세계대회 또는 박람회, 국내·외 행사 유치 등
- 6. 관련 가공산업의 수출기반 확대 및 판로개척
- 7. 공유시설의 설치 및 확충
- 8.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등 육성
- 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,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협력체계) 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, 기관·단체,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8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, 그 효율적 수행을 위

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·단체 등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- 제9조(위원회 설치) 시장은 커피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강릉시 커피산업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커피관련 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커피관련 산업의 현안에 관한 사항
 - 4.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-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커피산업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커피산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 - 1.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2. 기관 단체 등 및 직종 종사자
 - 3. 시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- 4. 관련 공공기관 및 타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- 5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.
- 제11조(위원회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표창) 시장은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커피산업의 효율적 육성에 이바지한 실적이 뛰어난 시민, 사업자,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·	규명:					
\bigcirc	성명	(단체	명)	•		
\bigcirc	주		소	:		
0	연	락	처	•		
		•				

제ㆍ개정안 내용	의	견	비고